

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# 시 보

제50호 2022. 12. 28(수)

## 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2-401호	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 .....	1
광양시 고시 제2022-405호	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.....	2
광양시 고시 제2022-408호	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.....	3
광양시 고시 제2022-410호	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(공원 제17호) 공원조성계획 결정 (정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...	5

## 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2-2546호	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	7
광양시 공고 제2022-2566호	공시송달공고 .....	12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    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

## 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

광양시 고시 제 2022-385 호와 관련하여 기재내용 착오로 인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### <당 초>

연번	도 로 명 주소		변경고시일	변경사유
	변 경 전	변 경 후		
1	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34-26	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34-24	2022. 12. 14.	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

### <변 경 >

연번	도 로 명 주소		변경고시일	변경사유
	변 경 전	변 경 후		
1	광양시 다압면 다사길 39-26	광양시 다압면 다사길 39-24	2022. 12. 14.	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2373)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20.

광 양 시 장

광양시 고시 제2022 - 405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광 양 시 장

### ▣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역

피 승인 자		공 사 내 용	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		실시계획 승인일
성 명	주 소		당 초	변 경	
광양시장 (관광과장)	광양시 시청로 33 (중동)	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(잔교설치)	2019. 12. 1. ~ 2022. 12. 31.	2019. 12. 1. ~ 2024. 12. 31.	2019.11.20.

#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12. 28.

### 광 양 시 장

#### 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483-64 외 4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2373, 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12. 28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5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840-2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483-64	20221228	20090623	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740	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172-39	20221228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6-13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3길 16	20221228	20160127	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553-4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도선1길 41	20221228	20180523	도선길 일련번호식 부여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24-7	전라남도 광양시 장내길 53-6 (태인동)	20221228	20130415	마을지명에서 인용

##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(공원 제17호)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성황동 348-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 제17호)의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광 양 시 장

### 1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#### 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증·감	
변경	17	성황공원	성황동 348-1번지 일원	526,929.7	527,925.7	996	1991.10.12

#### 나. 공원조성계획 세부내역 결정(변경) : 세부시설 결정 조서(붙임)

시설구분	부지면적(㎡)		건축 면적(㎡)		건축 연면적(㎡)		비 고 (부지면적)
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
합 계	526,929.7	527,925.7	-	-	-	-	시설율31.3%
시설면적 소계	167,560	168,556	-	-	-	-	증)996
기반시설	103,708	104,528	-	-	-	-	증)820
휴양시설	3,464	3,616	-	-	-	-	증)152
교양시설	535	559	-	-	-	-	증)24
유희시설	3,798	3,798	-	-	-	-	
운동시설	24,235	24,235	-	-	-	-	
편익시설	31,820	31,820	-	-	-	-	
공원관리시설	-	-	-	-	-	-	
녹 지	359,513.7	359,369.7	-	-	-	-	감)996

#### 다.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7	성황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설면적 신설 및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반시설 : 증) 820㎡</li> <li>- 휴양시설 : 증) 152㎡</li> <li>- 교양시설 : 증) 24㎡</li> </ul> </li> <li>녹지면적 변경 : 감) 996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황근린공원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특화된 근린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posco 플로우 기부금을 통한 posco '도이정원 숲' 을 조성 하고자함</li> </ul>

※ 세부시설 조서

시설 구분	변경 구분	번호	시설명	부지면적(㎡)		건축물				건물 동수		증감면적 (㎡)	비 고
				기정	변경	바닥면적		연면적		기정	변경		
		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	
합 계				526,929.7	527,925.7	-	-	-	-	-	-	증)996	
시설 소 계				167,560	168,556	-	-	-	-	-	-	증)996	
기반시설	-	소	계	103,708	104,528	-	-	-	-	-	-	증)820	
	신설	-	도 로	102,605	103,425	-	-	-	-	-	-	증)820	
휴양시설	-	라	다목적광장	1,103	1,103	-	-	-	-	-	-	-	
	-	소	계	3,464	3,616	-	-	-	-	-	-	증)152	
	-	가	숲속쉼터	1,350	1,350	-	-	-	-	-	-	-	
	-	가-3	숲속쉼터1	232	232	-	-	-	-	-	-	-	
	-	가-4	숲속쉼터2	314	314	-	-	-	-	-	-	-	
	-	가-5	숲속쉼터3	461	461	-	-	-	-	-	-	-	
	-	가-7	숲속쉼터5	154	154	-	-	-	-	-	-	-	
	-	가-8	숲속쉼터6	189	189	-	-	-	-	-	-	-	
	-	마	어사박문수쉼터	598	598	-	-	-	-	-	-	-	
	-	차	쉼터 및 광장	1,163	1,163	-	-	-	-	-	-	-	
	-	카	경로당	353	353	-	-	-	-	-	-	-	
	신설	가-10	숲이야기쉼터	-	86	-	-	-	-	-	-	증)86	
	신설	가-11	어사마패정원	-	66	-	-	-	-	-	-	증)66	
교양시설	-	소	계	535	559	-	-	-	-	-	-	증)24	
	-	나	유아숲체험원	535	535	-	-	-	-	-	-	-	
	신설	나-1	포토존	-	24	-	-	-	-	-	-	증)24	
유희시설	-	소	계	3,798	3,798	-	-	-	-	-	-	-	
	-	타	숲놀이터	2,335	2,335	-	-	-	-	-	-	-	
	-	파	통합놀이터	1,463	1,463	-	-	-	-	-	-	-	
운동시설	-	소	계	24,235	24,235	-	-	-	-	-	-	-	
	-	사	실내수영장	8,012	8,012	-	-	-	-	-	-	-	
	-	아	다목적 문화체육관	8,188	8,188	-	-	-	-	-	-	-	
	-	자	풋살장	3,204	3,204	-	-	-	-	-	-	-	
	-	바	인라인 스케이트장	4,831	4,831	-	-	-	-	-	-	-	
편익시설	-	소	계	31,820	31,820	-	-	-	-	-	-	-	
	-	다	주차장	31,760	31,760	-	-	-	-	-	-	-	
	-	다-2	주차장2	6,760	6,760	-	-	-	-	-	-	-	
	-	다-3	주차장3	23,075	23,075	-	-	-	-	-	-	-	
	-	다-4	주차장4	1,925	1,925	-	-	-	-	-	-	-	
	-	하	화장실	60	60	-	-	-	-	-	-	-	
	-	①	육교1	L=31m	L=31m	-	-	-	-	-	-	-	
	-	⑤	육교3	L=85m	L=85m	-	-	-	-	-	-	-	
공원관리시설	-	소	계	-	-	-	-	-	-	-	-	-	
	-	③	게시판	3개소	3개소	-	-	-	-	-	-	-	
	-	④	상징조형물	1개소	1개소	-	-	-	-	-	-	-	

라. 공원조성계획 관계도서 :계재 생략(광양시청 공원과 비치)

마. 세부시설 조서: 붙임 참조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(☎061-797-472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공고 제2022 - 2546호

##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광 양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-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범위 조문 정비
-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조문 정비
-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신청인란 및 피신청인란 변경

### 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### 4. 입법예고기간: 2022. 12. 26. ~ 2023. 1. 15.(20일간)

## 5. 의견제출

「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 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  - 라. 의견 제출할 곳
    - 주 소 :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건축과(우 57785)
    - 전 화 : 061-797-2877
    - 팩 스 : 061-797-2590
    - 전자우편 : wngud0510@korea.kr
- 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 2.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 성	반 대		

##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회의록”을 “내용을 기록한 회의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및 피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 청 인	단 지 명		관리사무소	
	대 표 자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피 신청 인 <small>※층간소음 분쟁은 주소만 기재 가능</small>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<u>광양시</u> <u>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「주택</u> <u>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</u> <u>사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</u> <u>여 적용한다.</u></p> <p>제9조(회의록 작성 및 비치) 위원회 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<u>회의록</u>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<u>공동</u> <u>주택관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1호에 <u>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</u></p> <p>제9조(회의록 작성 및 비치) ----- ----- <u>내용을 기</u> <u>록한 회의록</u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79조 규정에 따라, 건축주(소유자)에게 『위반건축물 원상회복(최종) 조치 요청』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2월 28일

## 광 양 시 장

1. 공고내용 :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)
3. 공고기간 : 2022. 12. 28. ~ 2023. 1. 17.(20일간)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건축물 소재지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건축주	반송주소	반송사유
광양시 광양읍 덕레리 18번지	무허가증축(건축법 제11조) -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193.38㎡ -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138.42㎡	원상회복 (최종)조치	박0구	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96	폐문부재

↓ 뒷면 계속

## 6. 유의사항

-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원상회복(최종) 조치 요청합니다.
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317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